

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55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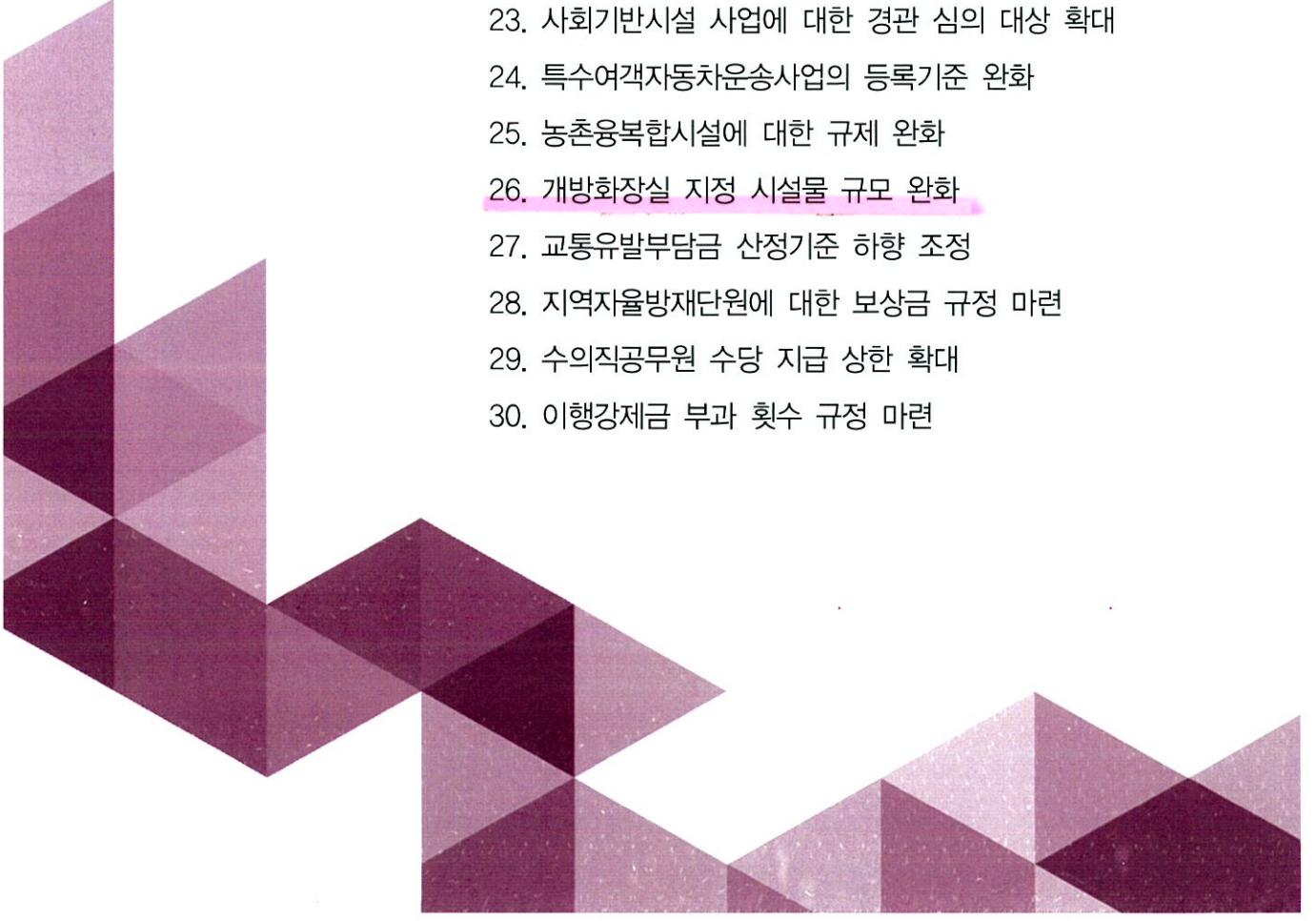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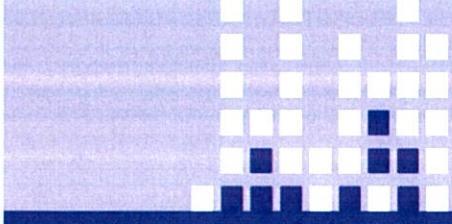


법제처

제 3 장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 20.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규정
 - 21.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상향
 - 22. 노후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 마련
 - 23.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확대
 - 2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 25.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 26.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 27.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하향 조정
 - 28.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 마련
 - 29. 수의직공무원 수당 지급 상한 확대
 - 30.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 마련



일러두기

1. 이 책자는 2014년도에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과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각각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이어,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여, 이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2. 이 책의 사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사례는 크게 문제 유형별(① 상위법령 위반, ②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③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과 주요 분야별(① 공유재산·계약, ② 지방보조금, ③ 기금·특별회계, ④ 가산금·과태료·지방세, ⑤ 위원회)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4. 이 책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해당하는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하게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 정부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조례내용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I. 문제점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제8조제1항, 2017.5.8. 공포, 2018.1.1.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규제 완화의 혜택을 주민이 받지 못함

II. 개선방안

-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 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상 편의 증진

관련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공중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 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796호, 2013.10.16. 일부개정]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18호, 2017.5.8. 일부개정]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